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8번지 / 전화 3707-8295 / 전송 3707-8309

처리부서 : 도시개발과(서소문별관2동) 담당:문중하, 계장:김용호

문서번호 도개58060-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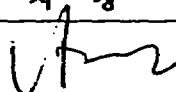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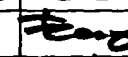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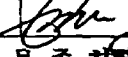

시행일자 1998. 1998. 2. 17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법무담당관실사필
주택국장	전 결	
과 장		
계 장		
기안	문 중 하 	

공민과장리본

제목 서울특별시채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행정제2부시장방침제44호(98.2.12)와 관련입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안의 미매각채비지중 건축물등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채비지에 대하여는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변동에 따라 시행상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채비지의 효율적관리를 도모코자 서울특별시채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저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장소 : 시보

나. 게재내용 : 공고안(별첨)

다. 게재일자 : 98. 2.

첨부 1. 공고안1부

2. 서울특별시채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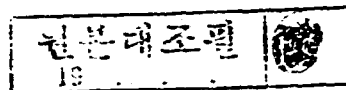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장

(제2안)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공고문 시보게재 의뢰

1.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 공고안에 대한



여 시보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공고안1부.

2. 서울특별시채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1부. 끝.

도 시 개 발 과 장

(제3안)

수신 시민과장

제목 컴퓨터계시판 게재 의뢰

1.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 공고안에 대하여 컴퓨터계시판 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고안1부

2. 공고안 디스켓1매. 끝.

도 시 개 발 과 장

(제4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채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채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입법예고 공고안을 송부하오니 귀실·국(주무과에서 의견수합) 및 자치구의 의견을 98. .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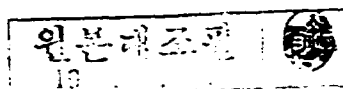
첨부 1. 공고안1부

2. 서울특별시채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 서실·국1-16, 재산관리과, 서구 1-25(채비지담당과), 서본부1-3

164



(제5안)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회장

참조 도시정비위원회

제목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입법예고 공고안 송부

1.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기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고안1부

2.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1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6안)

수신 법무담당관

제목 입법예고 공고안 송부

1.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입법예고 공고안을 별첨과 같이 송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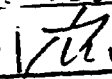
첨부 1. 공고안1부.

2.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1부. 끝.

도시개발과장

공 고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1998-76 호

서울특별시인민회		공 고
담당자	인사	수담담당관
최	정재	

서울특별시채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채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998년 2 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채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의 주요내용 및 취지

가. 개정의 취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안의 미매각채비지중 건축물등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채비지에 대한 대부료 또는 변상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여건변동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채비지의 효율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현행은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건물”만을 대부료부과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개발사업조례상의 기존무허가건물 인정기준 및 자치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상의 보상금지급대상 무허가건물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기존 무허가 건물(서울특별시개발



발사업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도 대부료 부과대상으로 함 (안 제2조제1항제2호)

- (2) 대부료 및 변상금의 납부기한 및 연체요율을 타공유재산 기준과 같게 하여 (30일→60일, 금융기관일반대출 연체이자율25%→ 15%) 점유자의 부담 경감 도모(안 제6조 및 8조)
-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서 그 설치조례에 서울특별시 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체비지를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 등의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1993. 3.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참조 : 도시개발과장, 전화 3707-829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나. 개정안의 구체적인 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과와 각 구청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업무 소관부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